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징집 사유 동거 기간 산입(조승환 의원안)	3

I. 개요

1.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
-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

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
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징집 사유 동거 기간 산입 (조승환의원안)

현 행	조승환의원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¹⁾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u>해당기간은 동거 기간에 미산입. <후단신설></u> - 대통령령: ① 징집 ② 학교 취학 ③ 직장의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④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징집 사유는 동거 기간에 산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u>징집에 의한 입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봄. <u>이 경우 해당기간은 동거 기간에 미산입하되, 징집에 의한 입영 사유는 1년 6개월을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u>

* 조승환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20)

1)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개정안은 징집으로 인한 입영 사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동거한 기간에 산입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3조의2²⁾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상속주택가액(해당 주택등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실거래가 신고제도,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1주택임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을 우대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려는 것임.

한편, 법 제23조의2제2항³⁾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로 정하는 사유(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동거 요건 적용을 완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징집에 의한 입영 사유의 경우 현행의 계속 동거 요건 완화에 더하여 군 복무기간을 동거한 기간에 1년 6개월을 한도로 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복무 기간으로 인한 동거기간 요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아래사유의 경우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미산입 ① 징집 ② 학교 취학 ③ 직장의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④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계속 동거로 보고, 동거기간에 산입 ① 징집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 미산입 ② 학교 취학 ③ 직장의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④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헌법⁴⁾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동거하지 못함에 따라 공제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군복무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개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개인적인 사유와 공익성, 불가피성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학교 취학, 근무지 이전,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와 목적상 차이가 있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개인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징집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를 위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징집을 다른 사유와 달리 취급하여 동거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임.

4)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다만, 기획재정부는 병역을 위한 입영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이 실제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거 기간 10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61